



# 화관법 제도 이해 및 대응

# 목 차

1. 국내화학물질관리 개요

2. 현.유해화학물질관리법

3. 화학물질관리법(전면개정)

4. 협의체 협의 결과

5. 기업 대응 준비 방안

# 1. 국내화학물질관리 개요



# 1. 국내화학물질관리 개요

## 화학물질관리 관련 제도 현황

관 리 대 상	소관부처	근거법령
산업용 화학물질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산업용 화학물질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농약 · 비료 · 사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의약품 · 화장품 · 마약	보건복지부	약사법, 화장품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식품 · 식품첨가물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
위험물 · 화약류	안전행정부	위험물안전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고압가스	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방사성물질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법

# 1. 국내화학물질관리 개요

Start your internet business with ASADAL

## 유해법 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1991년 2월 2일 시행

(화평법)

화학물질등록·평가

2013년 5월 22일 법안제정공포

화학물질관리법

2013년 6월 4일 법률개정공포

2015년 1월 1일 시행

# 1. 국내화학물질관리 개요

Start your internet business with ASADAL

## 화관법 전부 개정 배경

### ◆ 화학사고 빈번 발생:

- 구미불산사고(12.9.27) 이후 화학사고 지속발생(13.07까지 43건)
- 산재사망자 OECD최다,
- 산재로 인한 경제비용 연18조원(간접비용 포함)

### ◆ 화평법 제정: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대한 내용 이관

# 1. 국내화학물질관리 개요

Start your internet business with ASADAL

## 화평법 제정 배경

### ◆제정 배경:

- 화학물질 유통량이 급증하는 반면, 화학물질 정보가 부족함(현재 유통 중인 43,000종 중 약 15%만이 유해정보가 확인되었음).
-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정보 없이 제품 내 사용으로 국민건강에 위협
- UN에서 2020년까지 화학물질의 위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SAICM(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을 각국에서 채택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이를 근거로 EU 및 일본 등이 화학물질제도를 강화하고 있음)

### ◆제정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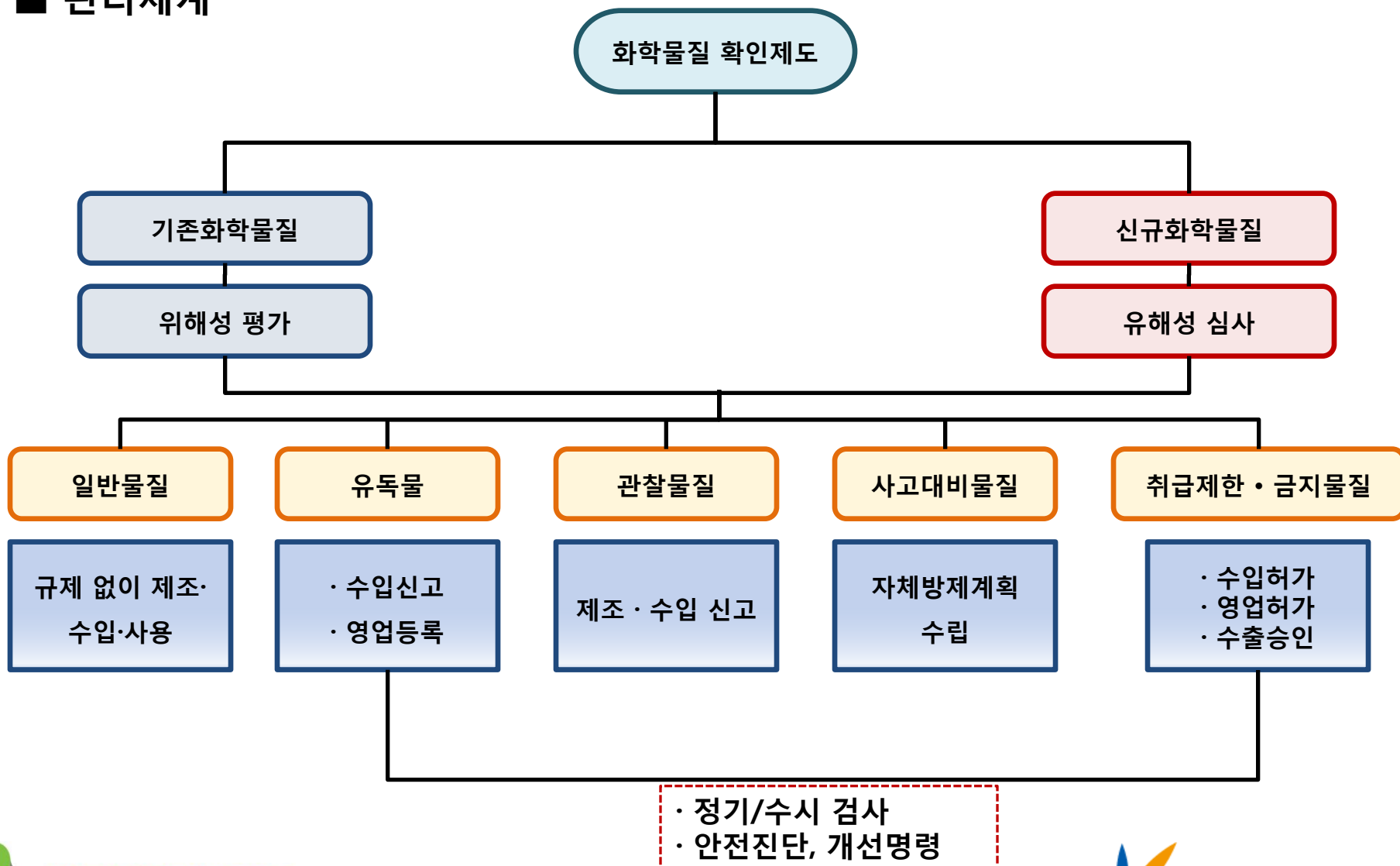
- 화학물질 정보 등록 및 평가를 통해 전 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과 생태계의 사전예방적 위해 관리 확립
- 국제 화학물질 제도 강화 추세에 대응하여 산업계 경쟁력 강화

## 2. 현.유해화학물질관리법



# 2. 현·유해화학물질관리법

## ■ 관리체계



## 2. 현.유해화학물질관리법

### ■ 적용 제외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에 따른 원제(原劑)와 농약
6.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과 식품첨가물
8.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
11.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

## 2. 현.유해화학물질관리법

### ■ 주요 제도

#### • 화학물질 확인 제도

-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신규물질, 유독물질,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여부를 확인하여 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 신규물질의 경우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유해성 심사

#### • 화학물질의 유통량과 배출량 조사

#### • 유독물 영업 등록, 수입신고

#### •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영업허가 및 수입허가

#### • 사고대비물질의 자체방지계획 수립

# 2. 현.유해화학물질관리법

Start your internet business with ASADAL

## ■ 규제 대상 확인 방법

### 1.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접속

- [http://ncis.nier.go.kr/ncis/CLU0402.action?b\\_id=00001&topordridx=1&leftordridx=1&menuid=CLU](http://ncis.nier.go.kr/ncis/CLU0402.action?b_id=00001&topordridx=1&leftordridx=1&menuid=CLU)

NCIS 화학물질정보시스템  
Chemicals Information System

HOME NCIS English NEWCHEM English 전체메뉴보기

물질검색 유해성심사 유독물분류표시 배출량조사 법령정보 알림마당 정보마당 NCIS소개

물질검색

화학물질검색 >

화학물질검색

HOME : 물질검색 > 화학물질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상세검색]

검색방법 CAS 번호, 국문명, 영문명, 화학물질번호(유독물, 기준화학물질 고유번호등)로 입력하여 물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어 중간에 '&&' 기호를 삽입하여 여러 키워드 검색 가능 (예 : 아세트산&&포름알데히드)

CAS번호순 10개씩 go

CAS번호	영문명	국문명	고유번호				유독물 등 혼합물질 함량 및 규제정보
			기준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 금지물질	
검색어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검색 결과를 보려면 << 1 >>

①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와 검색결과가 있어도 "대량생산화학물질"에만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유독물이나 관찰물질은 화학물, 영유 등 총칭명으로 지정된 경우가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검색물질이 "수화물"인 경우 수화물을 제외한 물질이 기존 물질에 있으면 신규화학물질이 아닙니다. (※ 대량생산화학물질이란 우리나라 기준이 아닌 전세계에서 천톤 이상 생산, 수입되는 화학물질임)  
 ② "유독물 등 혼합물질 함량 및 규제정보"를 클릭하면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 금지물질의 제품내 규제함량 및 규제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검색결과란의 고유번호내 기준물질은 기준화학물질목록등록물질(KE 번호)과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고시번호)이 모두 포함된 정보입니다.  
 ④ 고유번호란의 취급제한 금지물질의 번호를 클릭하면 세부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고유번호란에 기준물질번호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 유독물 등 규제대상이나 신규물질이 아닙니다.  
 ⑥ 고유번호란의 사고대비물질에 체크되어 있는 경우,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https://ccsms.nier.go.kr\)](https://ccsms.nier.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현.유해화학물질관리법

Start your internet business with ASADAL

## ■ 규제 대상 확인 방법

- 2. 제조·수입한 제품의 구성 성분 별 CAS No, 화학물질명 등을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
  - 기존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해당여부 확인
  - 검색 결과가 없는 화학물질은 신규화학물질에 해당됨

NCIS 화학물질정보시스템  
Chemicals Information System

HOME ▶ NCIS English ▶ NEWCHEM English 전체메뉴보기

물질검색 유해성심사 유독물분류표시 배출량조사 법령정보 알림마당 정보마당 NCIS소개

### 물질검색

화학물질검색

HOME : 물질검색 > 화학물질검색

50-00-0 검색 상세검색

CAS 번호, 국문명, 영문명, 화학물질번호(유독물, 기존화학물질 고유번호등)로 입력하여 물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어 중간에 '&&' 기호를 삽입하여 여러 키워드 검색 가능 (예 : 아세트&&포름알데히드)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결과 - 총 3건 [1/1 page] CAS번호순 10개씩 go

CAS번호	영문명	국문명	고유번호					유독물 등 혼합물질 함량 및 규제정보
			기준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 금지물질	사고대비 물질	
50-00-0	Formaldehyde ; Formalin	포름알데하이드 [이명: 포름알린; 포름알데히드; 포름올; 메탄알; 포름알리트; 포름알데히드용액]	KE-17074	97-1-345		06-5-5	<input checked="" type="checkbox"/>	<span>정보보기</span>
13150-00-	Sodium 2-[2-							

## 2. 현.유해화학물질관리법

### ■ 유해성 심사 제도

-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입되거나 제조되는 물질이 유통되기 전에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독성 등 유해성, 노출 및 사용정보 등의 자료를 제조 또는 수입자로부터 제출 받아 정부의 책임하에 평가하는 것.
- 신규화학물질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미리 예방하고자 함.

## 2. 현·유해화학물질관리법

### ■ 유해성 심사 면제 대상(1)

- 연간 100kg 이하로 제조·수입
- 제품을 개발하거나 공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연구자만 사용
-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수입
- 전량 수출하기 위한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수입
- 1991년 2월 2일 이전에 국내에서 제조되었거나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증명되는 화학물질
- 기본물질과 표면처리물질이 모두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적으로 표면 처리된 물질

## 2. 현.유해화학물질관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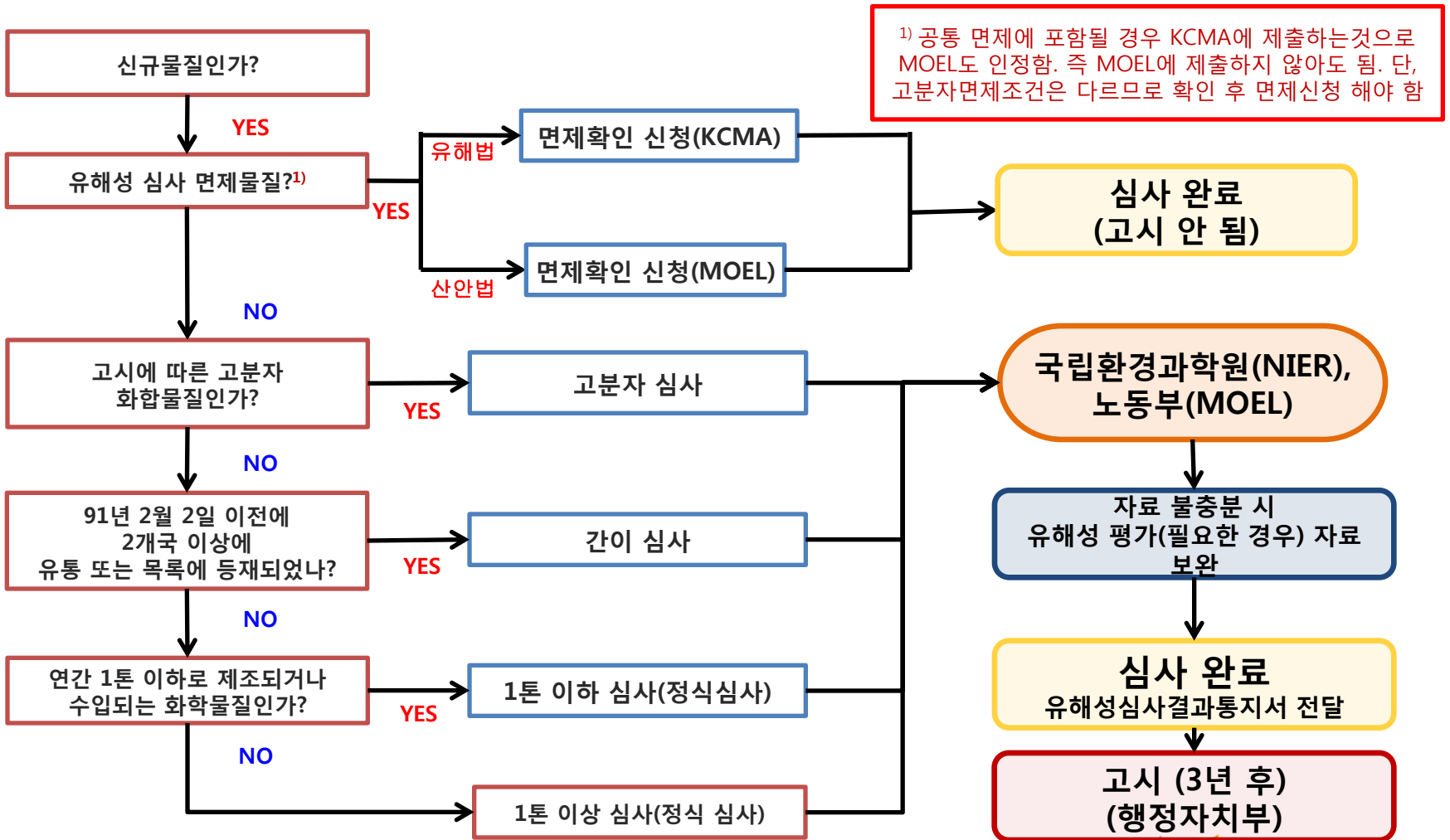
Start your internet business with ASADAL

### ■ 유해성 심사 면제 대상(2)

- 수평균분자량이 1,000 이상으로 고분자 단량체가 신규화학물질 및 유독물(무기화합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분자화합물
- 중량비가 2% 이하인 단량체를 제외한 단량체로 구성된 고분자가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고분자화합물
- 모든 블록이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블록고분자화합물
- 줄기 및 가지 부분이 모두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그래프트고분자화합물
- 수평균분자량이 10,000 이상인 비이온성 고분자화합물

# 2. 현.유해화학물질관리법

## ■ 유해성 심사 등록 절차



# 2. 현·유해화학물질관리법

## ■ 심사 종류

### • 공통제출자료

- 신고물질의 동질성자료(화학물질 명, CAS 번호, 제품명, 순도, 분자량, 분자식, 구조식) – STN 검색자료
- 주요용도, 녹는점, 끓는점, 증기압, 용해도 및 옥탄올 물 분배계수 등의 물리·화학적 성질(MSDS와 함께 첨부)
- 사용 중 환경에 배출되는 주요경로 및 예상 배출량에 관한 자료

### 간이심사

- 급성경구독성시험
- 유전독성 시험 1가지
- 복귀돌연변이시험
- 염색체이상시험

### 정식심사 (1톤 이하/이상)

- 급성경구독성시험
- 복귀돌연변이시험
- 염색체이상시험
- 미생물분해시험
-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 시 추가시험----
- 급성어류독성시험                      • 피부자극성시험
- 급성물벼룩독성시험                    • 눈자극성시험
- 조류성장저해시험                      • 피부과민성시험

### 고분자 심사

- 수평균분자량
- 분자량 분포를 보여주는 시험자료(GPC data)
- 단량체 구성비
- 잔류 단량체 함량
- 분자량 1000 이하의 함량
- 산,알칼리 안정성 시험 자료

• 소핵시험 : 유전독성 시험결과 양성인 경우 추가(간이심사 및 정식심사)

## 2. 현.유해화학물질관리법

### ■ 간이대상 심사 확인

1991년 2월 2일 이전에 2개국(EU는 1개 국가로 간주) 이상에서 유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경우 간이심사로 신청 가능(해당페이지 사본 첨부)

국가/목록	관련 URL
미국목록(TSCA)	<a href="http://iaspub.epa.gov/sor_internet/registry/substreg/searchandretrieve/searchbylist/search.do">http://iaspub.epa.gov/sor_internet/registry/substreg/searchandretrieve/searchbylist/search.do</a>
유럽목록(EINECS)	<a href="http://ecb.jrc.ec.europa.eu/esis/">http://ecb.jrc.ec.europa.eu/esis/</a>
캐나다목록(DSL)	<a href="http://www.ec.gc.ca/CEPARRegistry/subs_list/dsl/dslsearch.cfm">http://www.ec.gc.ca/CEPARRegistry/subs_list/dsl/dslsearch.cfm</a> <a href="http://www.ec.gc.ca/substances/nsb/search/eng/cp_search_e.cfm">http://www.ec.gc.ca/substances/nsb/search/eng/cp_search_e.cfm</a>
호주목록(AICS)	<a href="http://www.nicnas.gov.au/Industry/AICS/Search.asp">http://www.nicnas.gov.au/Industry/AICS/Search.asp</a>
일본기존화학물질목록(ENCS)	<a href="http://www.safe.nite.go.jp/english/db.html">http://www.safe.nite.go.jp/english/db.html</a> <a href="http://www.jaish.gr.jp/anzen_pg/KAG_FND.aspx">http://www.jaish.gr.jp/anzen_pg/KAG_FND.aspx</a>

## 2. 현.유해화학물질관리법

### ■ 화학물질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 • 유통량 조사 제도

조사대상업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업소(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일부에서 규정하는 사업장, 화학물질 수입자)

조사대상화학물질: ① 제조, 수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② 사업장 사용 원료, 부원료, 첨가제 ③ 사업장 사용 공정정보조물질, ④ 기타, 폐수, 폐기물처리시 사용 물질, 시설 또는 장치의 유지 보수에 사용하는 물질

조사내용: 사업자 일반사항, 화학물질의 종류와 제품명, 유통량..

#### • 배출량 조사

-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 휘발성유기화학물
- 수질 및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물질(화학물질)
-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 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을 가진 물질류

## 2. 현.유해화학물질관리법

Start your internet business with ASADAL

### ■ 유독물 수입신고 및 영업등록

#### • 유독물 수입신고

- 유독물(취급제한, 금지물질인 유독물 제외)을 수입하려는 유독물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
- 시험연구용, 검사용 시약 및 연간 100Kg 이하 수입은 신고 면제

#### • 유독물 영업 등록

- 유독물 제조,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함

#### \*주요제출서류

- 유독물 종류 및 연간 취급 예정량
- 유독물 취급시설 설치명세서
- 유출 예상 유독물의 양과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명세서

#### \*영업등록면제대상

- 기계 또는 장치내 유독물질
- 연구개발 또는 검사용 시약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 허가자
- ...

## 2. 현.유해화학물질관리법

Start your internet business with ASADAL

### ■ 취급제한/금지 물질의 관리

#### • 수입허가

- 취급제한물질 수입자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취급금지물질의 수입자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시험연구용, 검사용 시약 만 허가 가능)

#### • 영업 허가

- 취급제한물질 영업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 취급금지물질을 시험, 연구, 검사용시약으로 제조, 수입,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2. 현·유해화학물질관리법

Start your internet business with ASADAL

### ■ 관찰물질, 사고대비물질 관리

- 관찰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
-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이상 취급하는 자는 자체방지계획서 제출
  - 유독물영업자: 지자체
  - 유독물영업자 이외: 환경부 장관

### ※ 예외: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규정 또는 안전성향상계획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예방규정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에서만 고지 의무

## 2. 현·유해화학물질관리법

Start your internet business with ASADAL

### ■ 유독물 취급 시설 관리

- 유독물 취급시설 운영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함

### 대상 사업장

- 연간 5천톤 이상의 유독물 제조, 사용시설
- 연간 200톤이상(가스 또는 액체)의 유독물 보관·저장 시설

### 정기·수시 검사 기간

- 등록후 6개월이내, 최초 검사일로부터 1년(30일 이내) 정기 검사
- 사고 발생시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시 검사

### 3. 화학물질관리법(전면개정)



# 3. 화학물질관리법(전면개정)

## 주요 내용 요약

- 화학물질조사 확대·개편 및 정보공개강화(제10조~제12조)
- 취급자의 보호장구착용 및 진열·보관량 제한 근거 마련(제14조~제15조)
- 유해화학물질 표지제도 강화(제16조)
-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제도 도입 및 취급시설의 검사 제도 강화(제23조~제26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허가 제도 정리 시행(제27조~제28조)
-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 및 관리자 신고 제도 도입(제31조~제32조)
- 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 제도 개편 및 고지(제41조~제42조)
- 화학사고 발생시 대응체계 강화(제43조~제47조)
-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한 체재수단 강화(제35조~제36조, 제57조~제64조)

# 3. 화학물질관리법(전면개정)

Start your internet business with ASADAL

## 화관법 제외 대상: 타법령 규제 물질

0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02. 「약사법」 제2조제4호·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0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0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0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0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0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0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0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

# 3. 화학물질관리법(전면개정)

## 주요내용 ①

- 법률 명칭 변경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 물질등록 및 평가 조항 제외

- 유해화학물질 정의 수정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 관찰물질 삭제, 허가물질 신설

# 3. 화학물질관리법(전면개정)

## 주요내용 ②

### •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화학물질을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동일 제품의 경우 최초 1회만 제출
-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의 경우 등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될 경우 제출면제

# 3. 화학물질관리법(전면개정)

## 주요내용 ③

- 화학물질 조사 확대•개편

- 2년 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구, 유통량 조사)실시 : 취급현황, 취급시설
- 매년 지정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배출량 조사
- 배출량 조사 대상 물질 증가 예상: 하위법령확인 필요
- 통계조사 결과 및 배출량 조사 결과를 사업장 별로 공개  
(영업 비밀 등 예외 조항 인정)

# 3. 화학물질관리법(전면개정)

## 주요내용 ④

-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강화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도입

  - 취급시설의 안전 유지 관리

  -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를 위한 방재장치와 약품 구비

  - 유해화학물질의 이동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참여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또는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

-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 기체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 발생 우려 시

  - 고체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등의 비산 우려가 있을 경우

# 3. 화학물질관리법(전면개정)

## 주요내용 ⑤

-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강화

- 유해화학물질의 진열 및 보관 량 제한

규정 량 초과하여 진열할 경우 진열보관 계획서 작성

1회 규정 량 초과하여 운반할 경우 운반자, 운반시간, 운반 경로 등의 내용을 가진 운반계획서 제출

- 유해화학 물질의 표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 취급시설, 취급현장, 보관/저장 또는 진열장소, 운반차량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해야 함

- 유해물질명칭 또는 제품명
- 그림문자, 신호어
- 유해 · 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 공급자 정보
- 국제연합번호

# 3. 화학물질관리법(전면개정)

## 주요내용 ⑥

-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 허가대상물질의 경우 다음의 자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용도가 동일할 경우 공동 허가신청 가능)

-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정보

- 화학물질의 용도

- 화학물질의 위해성

- 허가물질의 대안분석 및 실행가능성

- 허가물질의 대체 계획

- 허가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허가번호, 허가물질의 용도와 제조,수입,사용의  
한정 기간 등의 조건을 부여

# 3. 화학물질관리법(전면개정)

Start your internet business with ASADAL

## 허가물질의 지정-화평법

- 환경부장관은 위해성이 우려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허가물질로 지정 고시할 수 있다.
  - 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
  - ②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
  - ③ 상기 ① 및 ②의 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위해 물질

# 3. 화학물질관리법(전면개정)

## 주요내용 ⑦

### • 금지물질 취급허가

- 시험, 연구, 검사용 시약은 그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화학사고 예방조치계획서 제출 등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건 요구 가능)

### •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 제한물질과 유독물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수입허가 및 수입신고를 받아야 함

(시험, 연구, 검사용 시약은 그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경우는 면제)

### •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 승인

-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3. 화학물질관리법(전면개정)

Start your internet business with ASADAL

## 제한·금지물질의 지정(화평법)

- 환경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해당물질을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 고시하여야 한다.
  - ①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국제기구 등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국제협약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 ④ 대체물질 또는 신기술 개발에 의하여 허가물질 지정이 해제된 허가물질

# 3. 화학물질관리법(전면개정)

## 주요내용 ⑧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운영자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

※  
검  
토  
사  
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인체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여부

화학사고에 따른 유출 또는 누출이 인체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되어야 함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또는 안전진단)를 받아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검사 또는 안전진단 적합판정을 받지 못할 경우 시설 사용 불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는 주 1회 이상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3. 화학물질관리법(전면개정)

## 주요내용 ⑨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을 영위하는 자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할 경우 위해관리계획서

-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적합한 취급시설, 장비 및 기술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 허가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3. 화학물질관리법(전면개정)

## 주요내용 ⑩

### •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 도급의 경우, 수급자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항을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
- 수급인이 법을 위반할 경우 도급인에게도 영향이 미침
  -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갖춘 자에게만 도급가능

###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및 신고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변경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 3. 화학물질관리법(전면개정)

## 주요내용 ⑪

-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해 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제출(기존: 자체방제계획)

1.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 사항에 관한 사항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5.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 계획이 수립된 경우 면제조항삭제)

-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매년 1회 이상)

# 3. 화학물질관리법(전면개정)

## 주요변경내용 정리①

구분

기존

변경

취급시설  
관리

- 유독물 등록제(지자체)
- 제한물질·금지물질 허가제(환경부)
- 사고대비물질 취급은 등록·허가없음
- 유독물 업체 지도·점검(지자체)
  
-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관리(지자체)
  - 필요시 안전진단 실시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허가제(환경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시 장외영향 평가성 작성, 제출, 적합통보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시 검사결과서 제출
  -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적합통보
- 유해화학물질 업체 지도·점검(환경부)
-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관리(환경부)
  - 필요시 안전진단 실시
  - 일정기간 경과시마다 안전진단 실시
  - 안전진단결과보고서 검증

# 3. 화학물질관리법(전면개정)

## 주요변경내용 정리②

구분	기존	변경
화학물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독물 수입신고 등 관리(지자체)</li> <li>• 4년마다 유통량 조사(환경부)</li> <li>• 유독물 분류표시 표시(환경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관리(환경부)</li> <li>• 2년마다 유통통계 조사(환경부)</li> <li>• 허가물질 취급 관리(환경부)</li> <li>•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환경부)</li> <li>•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 및 확인통보(환경부)</li> <li>• 유해화학물질 분류 표시(환경부)</li> </ul>
도급행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규정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급 신고(환경부)</li> <li>• 수급인 지도.점검(환경부)</li> </ul>

# 3. 화학물질관리법(전면개정)

## 주요변경내용 정리③

구분	기존	변경
안전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독물관리자 교육(환경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해화학물질관리자, 취급자, 운반자, 수급인 교육(환경부)</li> </ul>
벌칙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지사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출액 대비 5% 이하 과징금 부과(환경부)</li> <li>•2년에 3회 영업정지 처분시 영업허가 취소(환경부)</li> </ul>
정보공개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출량 조사</li> <li>• 사고대비물질 자체방제계획서 지역사회 고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통계조사</b> 및 배출량 조사</li> <li>• 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매년 1회 고지(<b>취급사업장</b>)</li> </ul>

# 3. 화학물질관리법(전면개정)

Start your internet business with ASADAL

## 벌칙-양벌규정

- 제57조(벌칙)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화학물질관리법(전면개정)

## 벌칙-양벌규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취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2. 금지물질을 취급한 자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한 자
  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위반
  5.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제34조제1항)
  6.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7.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8.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
  9. 위해관리계획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조치, 복구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46조제1항)

# 3. 화학물질관리법(전면개정)

## 벌칙-양벌규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3.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거나 보관·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자
  4.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한 자
  6.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7.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8. 안전진단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9. 취급시설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자
  11. 휴·폐업 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 화학물질관리법(전면개정)

Start your internet business with ASADAL

## 벌칙-양별규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하지 아니한 자
  2.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한 자
  3. 제한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을 받고 수출한 자
  4.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영업을 한 자
  5.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 3. 화학물질관리법(전면개정)

## 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환각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5.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자
6.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를 아니하거나 직무 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8. 제3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9. 제37조제4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한 자
11.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3. 화학물질관리법(전면개정)

Start your internet business with ASADAL

##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2. 기록·보존의무를 위반한 자

# 3. 화학물질관리법(전면개정)

Start your internet business with ASADAL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취소

- 금지물질 취급 위반
- 타 법령에 따라 영업과 관계 있는 인허가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허가를 득한 경우
- 환경부장관의 영업허가 필요조건 미준수
-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3. 화학물질관리법(전면개정)

Start your internet business with ASADAL

## 유해화학물질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허가증 대여
- 통계자료 또는 배출량 조사 자료 미제출
- 제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
-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초과 진열, 보관
- 운반계획서 미제출
- 유해화학물질 표시 미흡
- 등등등.....(총 26항목)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가능  
-매출액의 5% 이하  
-단, 단일사업장보유기업: 매출액의 2.5% 이하

# 3. 화학물질관리법(전면개정)

## 경과조치

- 종전 법에 따른 취급제한물질 수입허가인정
- 종전 법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인정
- 종전 법에 따른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인정
- 종전 법에 따른 유독물영업허가, 제한, 금지물질 영업 허가는 인정되나, **기한 내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 법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도급을 준 경우는 **기한 내에** 도급신고
- 종전 법에 따라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한 경우, **기한 내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 종전 법에 따라 자체방지계획서 제출한 경우, **기한 내에**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 4. 협의체 협의 결과

# 4. 협의체 협의 결과

## 영업정지 행정처분

### ■ 영업정지절차

- 화관법상 **26개 위법사항** 발생시, 위법 사항별 중대성, 횡수에 따른 행정 조치
  - **2년 기간 내** 차수가 누적될 때마다 **행정처분**(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부과
    - \* (예시) 1차(경고) → 2차(경고) → 3차(영업정지 5일) → 4차위반(영업정지 15일)
- 위법사항 시정이 가능한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이행시 **위반횟수 미 산입**
  -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 **위법사항, 개선명령, 이행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 (개선명령서의 내용) 위반행위의 장소와 시간,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위반행위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사항 및 이행기간

# 4. 협의체 협의 결과

## 영업정지 행정처분

### ■ 영업정지범위

- 26개 위법 양태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 \* 명의대여,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 미제출 등 위법의 영향이 사업장 전체에 미치는 경우는 영업의 전부를 정지
  - \* 유해화학물질 미표시, 취급시설 설치 · 관리기준 위반 등 위법의 영향이 사업장 일부에 미치는 경우에는 영업의 일부 정지 검토
- 일부 영업정지 범위는 업종별 실태조사,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업종별 상세지침”** 마련

# 4. 협의체 협의 결과

## 영업정지 행정처분

### ■ 영업정지일수

- 개인보호장구, 취급기준 중 행위위반은 2년내 4회 위반시 영업정지 5일 부과

사고시에는 사상자, 사업장 밖 피해액을 기준으로 부과

- (업무상 과실) 사망자 사고는 2차(15일), 3차(1개월), 사업장 밖 피해액이 1억원 이상시 매 1억원마다 1일 가산

- (업무상 중과실) 사망자 사고는 1차(15일), 2차(1개월), 사업장 밖 피해액이 1억원 이상시 매 5천만원마다 1일 가산

\* 업무상 중과실의 범위는 개선명령 미이행 등에 준하는 수준으로 구체화

### ■ 영업정지 행정처분 감경기준 마련

-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건강·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영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

⇒ 영업정지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확정 전 산업계 의견 수렴

# 4. 협의체 협의 결과

##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 ■ 과징금 산정방법

•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은 **영업정지 일수 × 일 부과 기준**

- 일 부과기준\*은 **매출액 5%(또는 2.5%)/6개월**

\* 해당 사업장의 영업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 1(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영업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7,200분의 1)

### ■ 일부 영업정지시 과징금 산정방법

• 과징금 산정시 매출액은 영업정지 범위로 한정하고, 매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안적 방법(직접매출, 자산가치비율 등) 적용**

기업 자료 제출(공정 전문가 및 회계사 검증) → 환경부 검토·결정

\* 매출액 = **직접매출**(국내 생산설비로 직접 제조후 판매) + **상품매출**(재수출, 역수입, 외 부상품, 매입/매출 등) + **기타매출**(임가공/설치, 커미션, 자재매출 등)

# 4. 협의체 협의 결과

## 화학사고 즉시 신고

### ■ 화학사고 신고대상

- 신고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누출량 및 사고 상황별 기준 마련
  - 주요물질은 물질별 유·누출량, 나머지 물질은 평균 유·누출량, 사고사례 등
- \* 별도의 실태조사,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상세지침 마련

### ■ 화학사고 신고시점

- 즉시 신고의 판단시점을 사고발생(또는 인지) 15분(北美 기준)으로 검토하되, 불가항력, 긴급 대응·조치로 인한 시간 지연은 면책 또는 감경 사유로 인정
- 소규모 사고에 여러 대응기관이 출동하여 발생하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지침 등에 반영

# 4. 협의체 협의 결과

## 장외영향평가서

### ■ 장외영향평가서 적용 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증설시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및 변경허가

###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시점

- 신규 취급시설은 즉시 적용
- 기존 취급시설은 단계별 유예
  -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 작성 대상자는 '15.12.31일까지 제출
  -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 작성 대상자 外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16.12.31일 또는 '17.12.31일까지 제출 (3년내 제출 완료)

# 4. 협의체 협의 결과

## 장외영향평가서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내용

- (기본 평가) 취급물질 목록·취급량 및 유해성 정보, 취급시설 목록·공정 및 운전 절차 정보, 사업장 주변지역 정보, 기상 정보
- (장외 평가) 공정 위험성분석, 사고 시나리오 · 가능성·위험도 분석, 주변지역 영향평가(이격거리에 따라 3개 구역으로 구분), 안전성 확보 방안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평가 절차

- 작성 · 제출(사업자, 전문기관) → 검토(화학물질안전원) → 보완 · 조정(사업자)  
→ 위험도 · 적합여부 통보(화학물질안전원)  
\* 안전성 확보 방안을 확보하도록 보완 · 조정
- 취급시설의 위험도, 주변지역 시설 민감도에 따라 안전관리 수위 결정  
- 정기 안전진단은 고위험은 4년, 중위험은 8년, 저위험은 12년마다 실시  
- 민감도가 높은 시설(아파트, 학교 등)이 사업장 밖에 위치하더라도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증설” 가능

# 4. 협의체 협의 결과

## 장외영향평가서

###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간소화

- 소량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취급량 등 간략한 자료 제출
-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시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면제  
(단, 예방계획 및 사고시 시행 계획추가)
-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 대상은 중복 항목에 대해서는 복사·제출  
⇒ 세부적인 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협력

###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 범용 프로그램 개발·배포, 시범사업 추진으로 현장 적용성·신뢰도 제고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지침서 발간, 작성대상 기업 설명회 등 교육 실시  
⇒ 고시 및 프로그램 설계 단계에서 산업계,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키로 협의

# 4. 협의체 협의 결과

Start your internet business with ASADAL

## 위해관리계획서

###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시점

- 신규 취급시설은 즉시 적용

- 기존 취급시설은 단계별 유예

  -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 작성 대상자는 '15.12.31일까지 제출

  -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 작성 대상자 외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16.12.31일 또는 '17.12.31일까지 제출 (3년내 제출 완료)

###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평가 절차

- 작성·제출\*(사업자) → 검토(화학물질안전원) → 수정·보완(사업자) → 적합 여부 통보(화학물질안전원)

\* 5년 경과 후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변경사항이 없으면 '변경 없음'으로 제출

# 4. 협의체 협의 결과

## 위해관리계획서

###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 (장외평가) 취급물질 목록·취급량 및 유해성 정보, 취급시설 목록·공정 및 운전 절차 정보,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유출·누출시나리오 등
- (예방프로그램) 공정위험성분석, 공정안전정보, 안전관리 계획 등
- (비상대응프로그램) 사고대비 교육·훈련, 비상연락체계, 안전관리 조직, 사고 시 주민 소산계획, 응급조치 계획, 피해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 조치계획 등

### ■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 (검토기준) 장외평가의 정확성, 예방·비상대응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 등
- (검토절차) 위해관리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 예방규정 심사, 검토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협력

# 4. 협의체 협의 결과

## 위해관리계획서

###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간소화

-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 예방규정 대상의 경우 **중복 항목**에 대해서는 **복사·제출**

\* 세부적인 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협력

###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지원

- 범용 프로그램 개발·배포, 시범사업 추진으로 현장 적용성·신뢰도 제고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서 발간**, 작성대상 기업 설명회 등 교육 실시

# 4. 협의체 협의 결과

Start your internet business with ASADAL

## 위해관리계획서

### ■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내실화

- (고지범위) 취급물질 누·유출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거주민
- (고지주기) 법에서 1년마다 고지토록 규정(구 유해법도 동일)
- (고지방법) 대표전달(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사무소, 통·반장 활용), **공동 고지** 등 효율적 고지 방식 반영

# 4. 협의체 협의 결과

## 도급행위 관리

### ■ 도급인 연대책임 명확화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보관·저장업, 운반업 등)와의 관계는 **영업거래로 판단**

\* 보관·저장업, 운송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운송시 도급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장 밖 사고 발생시 해당 영업자에게 행정처분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아닌 **하도급업체**에서 유발한 사고에 대한 원청 책임은 **도급인의 관리·감독 수준에 비례**하여 부과

⇒ 구체적인 사항은 법령해석지침 등에 반영

### ■ 도급신고

- 도급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제출(도급계약서는 미첨부)

\* 수급인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시 제정

# 4. 협의체 협의 결과

Start your internet business with ASADAL

## 취급시설 설치·관리

### ■ 정기·수시 검사

- (정기검사) 영업허가를 받은 시설은 **1년**, 이외의 시설은 **2년**마다 실시

\* 고압법에 따른 시설은 법에서 적용 제외, 산안법에 따른 사항은 적용(현행과 동일)

- (수시검사) 사고발생 우려시 또는 발생 후 환경청장 요구에 따라 실시

\* 정기·수시검사는 지도·점검 대신에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환경청에서 검사결과서 검토 및 현장 실사 후 필요시 부과(사전 시정가능)

### ■ 정밀 안전진단

- (정기진단) 장외영향평가 실시결과, **고위험은 4년, 중위험은 8년, 저위험은 12년**마다 실시, 장외영향평가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4년마다 실시

- (수시진단) 정기·수시검사 이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

# 4. 협의체 협의 결과

Start your internet business with ASADAL

## 취급시설 설치·관리

### ■ 취급시설 자체 점검

- 설치기준을 구체화하고, 타 법령상 유사한 사항은 인용하여 세부기준 마련

\*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 위험물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기준을 따르되,

-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위험물안전관리법」보다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된 설치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화관법 준수

# 4. 협의체 협의 결과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제33조)

### ■ 안전교육대상

- (그룹1)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통계조사표 · 배출량조사표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담당자,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종사자
- (그룹2) 해당사업장의 모든 종사자

### ■ 안전교육 방법 및 시간

- (그룹1)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관리협회, 환경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 과정 수료
  - 2년마다 16시간 이상,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16시간 추가
- (그룹2)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관리협회, 환경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전문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실시하는 **일반교육 과정** 수료
  - 매년 2시간 이상, 온라인 교육 가능

### ■ 타법(산안법 등)에 따른 교육과의 관계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화관법의 준수사항을 교육
  - 타법에 따른 교육으로 화관법에 대한 지식 · 소양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 화관법상 안전교육과 타법에 따른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 협력**

\* 화관법과 타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일치시키는 방안 등

# 4. 협의체 협의 결과

## 진열·보관계획서, 운반 계획서(제15조)

### ■ 진열·보관계획서 대상

- “유해화학물질 판매자” 중에서 유독물질의 경우 500킬로그램초과시,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사고대비물질의 경우 100킬로그램 초과시 해당

\*인터넷, 앱 등을 통해 신청하면 현장확인 후 확인 증명서 발급

### ■ 운반계획서 제출 대상

- 유독물질의 경우 5,000킬로그램 초과시,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사고대비물질의 경우 3,000킬로그램 초과시 해당

\* 신고를 한 것으로 의무 이행

- 인터넷, 앱 등을 통해 신청서와 통행도로(출발→도착), 통행도로 주변 하천 정보 제출

###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구 유해법상 등록·허가 면제 기준을 고려하여 시행령에 허가 면제 기준 마련
  - 기존 유독물 등록업체, 취급제한금지물질 허가업체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
  - 위해관리계획서 대상인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일정기간 내 허가(규모별 차등화)

• 영업허가시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은 모두 자격증을 소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하위법령 마련

# 4. 협의체 협의 결과

## 기타 사항

###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 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서 **상하차할 때**,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은 **하위법령에 구체화**  
⇒ 조문에 대해서는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

### ■ 화학물질 확인

- 불가피한 경우(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화학물질)에 대해 사후 신고 가능(14일 이내)

### ■ 화학물질 통계조사

- 화관법상 통계조사(전수조사)와 화평법상 제조·수입 보고의 중복 제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보고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

# 4. 협의체 협의 결과

Start your internet business with ASADAL

## 기타 사항

### ■ 개인정보장구 기준

-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고시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고시 마련시 협의**

### ■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 **회사 분석실에 대한 관리법령이 없기 때문에 화관법에 의해 관리될 필요**
- **물질 자체에 대한 취급기준을 적용하고, 취급시설 설치기준은 제외**

# 4. 협의체 협의 결과

## 향후추진계획





## 5. 기업 대응 준비 방안

# 5. 대응 준비 방안

Start your internet business with ASADAL

## 1. 인벤토리 작성

- 물질사용량, 용도 벤더 정보 확인
- 통계조사, 실적조사에 활용에 사용
- 등록대상물질 선정시 공급망 등록여부 확인시 사용
- 허가대상물질 포함여부 확인
- 인벤토리관리 시스템 점검 또는 도입

## 2. 화학물질관리체계 점검

- 각 규제의 관리체계 점검후 누락부분 보강
- 부서별 R&R 점검 및 개선

## 3. MSDS 보완방법수립

-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포함

# 5. 대응 준비 방안

Start your internet business with ASADAL

## 4. 도급현황 파악

- 하도급 관계는 산안법 참조
- 하도급관계일 경우 신고준비

## 5. 화관법 시행에 따른 추가 서류 준비

-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지역사회고지 절차 수립)
- 진열보관계획서
- 운반계획서

## 6.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임명(신고)

- 기한내 신고

# 5. 대응 준비 방안

Start your internet business with ASADAL

## 7. 유해화학물질분류 확인

- 분류에 따른 표시 준비

## 8. 사업장 안전진단 및 보완방법 수립

- 시설/장비 정기 점검 및 기록 보관

# 5. 대응 준비 방안

Start your internet business with ASADAL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및 화학물질 규제 대응 통합 프로세스 확립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서부터 화학물질규제대응(제품규제)까지 종합적인 프로세스를 확립
- 효율적으로 기업이 원활한 산업활동을 유지

